

광주지방법원 2022. 5. 26 선고 2021나52791 판결 [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말소]

재판경과

광주지방법원 2022. 5. 26 선고 2021나52791 판결

광주지방법원 2021. 2. 3 선고 2020가단5674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연

피고, 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천형욱

변론종결 2022. 5. 12.

판결선고 2022. 5. 26.

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. 2. 3. 선고 2020가단5674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10. 21. 한 매매계약을 50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,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 판결 제2쪽 제9행의 “50,000,000원” 뒤에 “(이하 ‘이 사건 차용금’이라 한다)”를, “갑 제5호증” 뒤에 “이하 ‘이 사건 차용증’이라 한다”를 각 추가한다.

○ 제1심 판결 제3쪽 제20행의 “갑 제1호증”을 “갑 제5호증”으로 고쳐 쓴다.

2. 추가 판단

가. 보충송달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

원고는,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에게 송달할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인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이상 송달받을 사람이 그 서류의 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다 할 것이어서(대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8다229984 판결, 2005. 12. 5. 선고 2005마1039 결정 등 참조), C에 대한 지급명령과 선박가압류 결정이 동거인인 D와 H에게 송달 되었을 때 C에 대하여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C 또한 각 서류의 내용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. 살피건대,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규정된 보충송달의 효력은 소송법상 송달의 효력이 본인에게

미친다는 것이지, 본인이 해당 서류의 내용까지 알았음을 추정간주하는 것은 아니므로,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나.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

원고는, 설령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더라도, 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한 것은 C, D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어선운영비 또는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, C은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 민법 제832조 소정의 연대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,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 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,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,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(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7다31229 판결, 1999. 3. 9. 선고 98다46877 판결 등 참조).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, 이 사건 차용금이 2015. 11. 19. 피고 C 명의의 수협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같은 날 I에게 20,100,000원이 송금되고, J, K, L, M, N, O, P에게 합계 27,220,000원이 송금된 사실, 그 다음날 전기요금 240,950원과 케이블유선방송사용료 13,060원이 각 출금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, 이 사건 차용증에는 차용의 목적이나 경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 점, I, J 등에게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이 구체적으로 C, D 부부의 공동생활과 어떠한 점에서 관련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부족한 점, 위 전기요금과 케이블 유선방송사용료의 액수는 이 사건 차용금의 전체 액수인 50,000,000원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, 갑 제15호증의 기재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금의 차용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다.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

원고는, C이 이 사건 차용증의 차용인란에 직접 기재한 사실이 없고 D이 C을 대신하여 차용인란에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하더라도, C과 D은 원고에게 어선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용금의 대여를 요청하였으므로, C은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 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. 살피건대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D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차용행위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원고가 D이 C을 대리하여 대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라. 선박 경매와 관련하여 C이 채권을 인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

원고는 C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 소유의 선박에 선박가압류 결정을 받았고, 위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선박가압류 채권자로서 채권신고를 하여 배당까지 받은 바, C이 위 선박에 대한 경매가 개시된 것을 알았음에도 원고가 배당받은 것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C이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소유의 선박(Q)에 대하여 2021. 3.

17. 광주지방법원 R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, 원고가 2021. 11. 19. C에 대한 지급명령

결정(광주지방법원 영광군법원 2019차202) 및 선박가압류 채권자로서, 위 경매절차에서

14,207,836원을 배당받은 사실, C이 원고의 위와 같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

사실은 인정된다.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

즉, ① C이 자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서도 배우자인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

차용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위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도 충분히

가능하므로 C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정을 들어 자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였다고

단정하기는 어려운 점, ② C은 일관되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

있고,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할 선박의 매각대금이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배당표 기재 채권자들의 채권 합계액에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그 금액은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될 뿐 C이 지급받을 잉여금이 남지 않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C이 원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이 특별히 자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의 존재를 자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진만, 판사 유상호, 판사 송인경

별지